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군사보안, 군 방첩(防諜)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라 설치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고, 해당 사령부의 예하부대 중 군사안보지원부대의 명칭을 국군방첩부대로, 학교기관의 명칭을 국군방첩학교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 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

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”을 “국군방첩사령부령”으로 한다.

제1조 및 제2조 중 “군사안보지원사령부”를 각각 “국군방첩사령부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·제2호, 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“군사안보지원부대”를 각각 “국군방첩부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군사안보지원부대”를 “국군방첩부대”로 한다.

5. 국군방첩학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제3호 중 “군사안보지원부대”를 “국군방첩부대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제1호 중 “군사안보지원사령부”를 “국군방첩사령부”로 한다.

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국군방첩사령관

③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 중 “군사안보지원사령관”을 “국군방첩사령관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3호의 세부 기준란의 바목 및 사목 중 “군사안보지원부대”를 각각 “군 방첩 업무 수행 부대”로 한다.

④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“군사안보지원사령관”을 “국군방첩사령관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직위란 중 “군사안보지원사령관”을 “국군방첩사령관”으로, “군사안보지원사령부”를 각각 “국군방첩사령부”로 한다.

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국군방첩사령부

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군사안보지원사령부”를 “국군방첩사령부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군사안보지원사령부”를 “국군방첩사령부”로 한다.

⑦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국군방첩사령부

⑧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바. 국군방첩사령부

제10조제3항제3호 중 “군사안보지원사령부”를 “국군방첩사령부”로 한다.

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군사안보지원사령부”를 “국군방첩사령부”로 한다.

⑩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 중 “군사안보지원부대”를 “국군방첩부대”로 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“군사안보지원사령부”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“국군방첩사령부”를, “군사안보지원사령관”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“국군방첩사령관”을, “군사안보지원부대”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“국군방첩부대”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국군조직법」 제2조 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, 군 방첩(防諜)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<u>군사안보지원사령부</u>를 설치하고, 그 조직·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설치) <u>군사안보지원사령부</u>(이하 “사령부”라 한다)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. 제6조(조직) ① (생략)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,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. 1.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·기관의 <u>군사안보지원부대</u> 2.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<u>군사안보지원부대</u>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국군방첩사령부</u>----- ----- -----. 제2조(설치) <u>국군방첩사령부</u>----- ----- -----. 제6조(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--<u>국군방첩부대</u> 2. ----- -----<u>국군방첩부대</u>

3.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<u>군사안보지원부대</u>. 다만, 지방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<u>군사안보지원부대</u>를 둘 수 없다. 4. 정보보호부대 5. <u>군사안보지원학교</u> 6. 방위사업청의 <u>군사안보지원부대</u> 7. 국방보안연구소 ③ (생략)	3. ----- <u>국군방첩부대</u>. ----- -----<u>국군방첩부대</u>-----.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국군방첩학교</u> 6. 방위사업청의 <u>국군방첩부대</u> 7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